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발급한 성적표를”을 “취득한 성적을”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 중 “9학점”을 “6학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보기술(IT)과목 : 3학점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와 제3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시험 당일의 불가피한 사유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3천만원 이상의 채권”을 “채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감사 또는 증명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의 체결 이전부터 계속하여 존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

로 인해 발생한 채권·채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체결한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적기시정조치

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융상품 관련 계약 제1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표준약관”을 “감사 또는 증명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의 체결 이전에 약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주택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중 나목에 해당하는 채무가 감사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여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발생한 채무(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채무는 제외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바목 중 “아니한 채무”를 “아니한 채무.”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계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상거래(채권·채무의 발생원인이 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의해 발생한 3천만원 미만의 채권·채무

제31조제1항 중 “7인”을 “9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1명”을

“1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근부회장”을 “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상임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인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회계학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③ 제2항제5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 중 “4인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별표 1 경영학의 과목별배점란 및 경제원론의 과목별배점란 중 “100점”을 각각 “80점”으로 하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의 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법(상법의 총칙편·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공인회계사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별표 2 재무회계의 과목란을 “재무회계 I (중급회계)”로 하고, 과목별 배점란 중 “150점”을 “100점”으로 하며, 재무회계란 다음에 “재무회계 II

(고급회계)”란을 신설하며, 과목별 배점란을 “50점”으로 하고, 원가회계의 과목란을 “원가관리회계”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별표 3]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2조제4항관련)

구 분	내 용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일반응시자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 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 530점 이상 IBT : 71점 이상	PBT : 352점 이상 —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350점 이상
텡 스 (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04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Proficiency Test, Seoul Foreign Language University)	625점 이상	375점 이상

(FLEX)	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상	상
아이엘츠 (IELTS)	영국의 영어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하는 시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을 말한다.	Score 4.5 점 이상	—

비고

1. 위 표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응시자(이하 "청각장애 응시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를 말한다.
3.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었음을 소명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 ③ (생략)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 ----- ----- 취득한 성적을 -----.
제2조의2(응시자격) ①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이하 이 조에서 “해당과목”이라 한다) 및 학점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의2(응시자격)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경영학과목 : <u>9학점</u>	2. ----- : <u>6학점</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정보기술(IT)과목 : 3학점</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응시수수료) ① (생략)	제7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② ----- -----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1. ~ 3. (생략)

<신설>

제14조(직무제한)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제외한다.

가. (생략)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적금 등 채권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시험 당일의 불가피한 사유

제14조(직무제한) ①-----

-----.

1. (현행과 같음)

2. -----
-- 채권 -----
-----.

-----.

가. (현행과 같음)

나. 감사 또는 증명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의 체결 이전부터 계속하여 존

다.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하
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시설물이
용권 등 채권
라. (생략)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재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
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이하 “약관”이
라 한다)에 따라 체결한 계
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
· 채무.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계약한 경우
-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
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
능성이 있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융상품 관련 계
약

다. 감사 또는 증명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의 체
결 이전에 약관-----

라. (현행과 같음)
마. 주택담보대출·예금담보

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예금
담보대출 등 통상의 절차
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지급기일이 2월 이내인 채
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
무 <단서 신설>

사. (생략)
<신설>

3. ~ 5. (생략)

대출 등 통상의 절차에 따
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
된 채무 중 나목에 해당하
는 채무가 감사기간 중 만
기가 도래하여 그 계약기
간을 연장하여 발생한 채
무(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채무는 제외한다)

바. -----

----- 아니한 채
무.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
하게 계약한 경우는 제외
한다.

사. (현행과 같음)

아. 상거래(채권·채무의 발
생원인이 가목부터 사목까
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약
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의해 발생한 3천만원 미만
의 채권·채무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생략)

2. 금융위원회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그 소속 상근부회장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비상임위원중 1인

5. (생략)

<신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9인-----.

②-----

-----.

1. (현행과 같음)

2. -----

----- 1인

3. -----

-- 임원-----

4. -----

----- 위원-----

--

5. (현행과 같음)

6.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인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

<u><신 설></u> 제35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u>4인 이상</u>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나. 대학에서 회계학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u> <u>③ 제2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 제35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 <u>과반수</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연 락 처	(02) 2100 - 2693